

문경관광진흥공단 임원추천위원회 공고 제2019-01호

## 문경관광진흥공단 임원(비상임이사) 공개모집 공고

문경관광진흥공단 임원(비상임이사)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을 하오니 공단을 이끌어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2019년 5월 21일

문경관광진흥공단 임원추천위원회위원장

### 1. 임용예정 직위 및 인원 : 비상임이사 3명

### 2. 임기 및 보수

가. 임명기간 : 임용일로부터 3년

나. 보 수 : 무보수(회의참석수당 등 실비 지급)

### 3. 응모자격

| 구 분   | 자 격 기 준  |
|---|--|
| 공통<br>사항  | “지방공기업법 제60조(임원의 결격사유)” 및 문경관광진흥공단 정관 12조에 해당 되지 않는 자로서 다음 자격요건 중 최소한 하나 이상 갖춘 자   |
| 자격<br>요건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세무 및 회계전문가</li><li>○ 정부기관 또는 민간기업체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</li><li>○ 예산 및 회계분야 경험 또는 경제분야 행정경험이 있는 자</li><li>○ 지방공기업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시견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</li></ul> |
| <u>지방공기업법 제60조(임원의 결격사유)</u>  |  |
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1.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</li><li>2. 미성년자</li><li>3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</li><li>4.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</li><li>5.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</li></ol> |  |

### 문경관광진흥공단 정관 제12조(임·직원의 결격사유)

1.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
2. 미성년자
3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4.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별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6. 공단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

## 4. 임용예정직위 주요 직무내용

- 공단의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공단의 주요 업무를  
심의 의결

## 5. 직무수행요건(요구능력수준)

- 공단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 
리더십, 문제해결 능력을 겸비한 자

## 6. 지원서류 접수

가. 접수기간 : 2019. 5. 21(화) ~ 2019. 6. 5(수), 09:00~18:00까지  
(단, 토·일 및 공휴일 접수 제외)

나. 접수방법 : 방문접수, 등기우편접수(접수마감일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함)

다. 접수장소 : (우:36978) 문경시 매봉길 65, 3층 문경관광진흥공단  
문경관광진흥공단 경영지원팀 (054)553 – 3107)

### 라. 제출서류(공통)

- 지원서(소정양식, 사진부착) 1부 – [별첨 1]
- 직무수행계획서(소정양식) 1부 – [별첨 2]
- 자기소개서(소정양식) 1부 – [별첨 3]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(소정양식) 1부
- 최종학력 및 경력증명서 각 1부
- 관련 자격증 사본(해당자에 한함) 각 1부
- 기본증명서(상세) 1부

\* 문경관광진흥공단 홈페이지(<http://www.mgtpcr.or.kr>)에서 다운받아 작성

## 8. 심사방법 및 합격자 발표

- 가. 1차 시험(서류심사) : 응모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
- 나. 2차 시험(면접심사) :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정
- 다. 최종합격자 발표 : 개별 통지

## 9. 기타사항

- 가.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,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 이내에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경우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인 확인 후 반환합니다.
- 나. 지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, 허위기재, 자격미비자의 응모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모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, 제출된 각종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해당자에 대하여는 임용을 취소합니다.
- 다.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 4(임원후보의 추천절차)와 관련하여 응모자 접수결과 모집인원의 2배수 미만인 경우 재공고를 실시하며, 재공고하는 경우 본 공고에 따른 응모자격은 유효로 합니다.
- 라. 임원추천위원회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거나, 임명권자가 임원후보 재 추천을 요구할 경우에는 후보자 모집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.
- 마. 본 공모기간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사항은 문경관광진흥공단 홈페이지와 문경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원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.
- 바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경관광진흥공단 경영지원팀(☎ 054-553-3107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